**공정 01-00-00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정 2004-09-16

제3차 개정 2022-05-02

제1장 총칙

# (목적)

이 규정은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임직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적용 범위)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경쟁법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 경쟁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과 이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 거래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법규를 말한다.

### 경쟁당국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 임직원은 회사에 소속된 자로서 정규 및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을 불문하고 회사로부터 위임 또는 관리 감독을 받아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제2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1절 자율준수관리자

# (선임과 해임)

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자율준수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 (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조사권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 경쟁법 위반자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보고권

###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권

###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 (의무)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 (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관리

###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경쟁법 및 자율준수와 관련된 교육 관리

### 경쟁법 위반 사항에 대한 분석과 개선, 시정 및 예방 조치의 강구

### 자율준수관련 활동 및 사안의 이사회 보고

### 현업부서 (구매 등) 대상 정기·비정기 자율준수 관리자 주관 회의 개최

###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 및 관리

###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인사상 불이익 부과 금지)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 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 준수 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사의 지원)

##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전담부서)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수행을 보조하며,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자율 준수 프로그램 운영의 실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공정거래 담당 부서에서 맡는다.

제2절 자율준수위원회

# (설치 및 구성)

## 자율준수관리자는 관련 부문 임원 또는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자율준수위원회를 자문 및 협의 기구로 운영할 수 있다.

## 자율준수위원회 위원장은 자율준수관리자가 한다.

## 자율준수위원회 구성원은 사안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할 수 있다.

# (역할)

자율 준수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자율준수의 기본방침 설정

### 중요 사항에 관한 심의 및 필요한 조치 사항 권고 또는 자문

제3절 임직원

# (의무)

## 모든 임직원은 경쟁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쟁법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전담부서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경쟁법 위반 또는 위반소지를 인지한 직원은 신속하게 이를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전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 (자율준수 의지 선언)

##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경쟁법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 의지를 선언한다.

##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는 공식적인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표명되어 회사의 임직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 전항의 문서는 필요 시 회사의 임직원은 물론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도 공지한다.

# (자율준수편람)

##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매뉴얼)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자율 준수 편람은 전자 문서로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편람을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매년 자율준수편람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편람을 개정한다.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자율준수편람을 개정할 수 있다.

# (모니터링 제도)

##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 시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 임직원의 자율준수 실태 등에 대한 점검, 조사

###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각 부서별로 작성한 각종 체크리스트의 검토 및 확인

###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 전담 부서장은 매년초 연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수감 부서는 모니터링 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모니터링 시 지적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적절한 시정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전담부서에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규정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는 연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내용은 경쟁법의 주요사항 및 업무 수행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자율준수규정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경쟁법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사항들로 한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할 것을 인사 관리 부서에 건의할 수 있다.

### 자율준수교육에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경쟁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경쟁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인사제재를 할 수 있다.

## 경쟁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인사 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 회사는 경쟁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시 필요할 경우 자율준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 (문서관리)

##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

## 전담 부서는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를 정확하고 최신 정보에 바탕한 내용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운영성과 평가)

##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필요 시 평가하여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공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상황을 웹사이트, 공시자료 또는 정기 발간 보고서 등에 자진 공시하여야 한다.

# (경쟁당국과의 관계)

자율준수관리자는 경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정 및 개정)

##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업무는 자율준수관리자가 담당한다.

## 회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정한 사규 및 각종 매뉴얼 등은 이 규정에 입각하여 작성·운영되어야 한다.

## 회사의 사규 및 매뉴얼을 소관하는 부서는 그 사규 및 매뉴얼의 제정 또는 개정 시 이 규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다른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와 협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